

※취학원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이 안내를 잘 읽고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2025년도 취학원조 제도의 안내

보호자 여러분께

사카이시 교육위원회

사카이시에서는 공립 초·중학교(국립, 지원학교는 제외)에 취학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취학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와 등의 비용 일부를 원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희망하시는 분은 1~5의 설명을 잘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학원조제도에
관한 내용은 여기



◎ 취학원조 신청은 매년 하셔야 합니다. 또한 3월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수급하신 분도 '학용품비' 등의 원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신청방법 등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5일(화)~2025년 4월 30일(수)

※신청 기간이 지난 5월 이후에도 내년 2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자격 인정을 받게 되면 신청하신 월 해당분부터 지급됩니다.

주의

- 학교, 구청 창구에서 신청은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와 교부(학교 및 구청)도 4월 15일부터입니다.
- 전자 신청은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등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 기간은 변경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아래의 ①~④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자 신청

사카이시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신청은
여기로



② 우편에 의한 신청

사카이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홈페이지에 기재된 '우편 발송 시 주의사항'에 따라 2025년 4월 30일(수) (※당일 소인 유효)까지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2쪽 2-(2)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분은 첨부 서류(복사본)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보낼 곳 <<〒590-0078 堺市堺区南瓦町 3-1 堺市教育委員会 学務課

School Affairs Division (Gakumu-ka), Sakai City Board of Education (Sakai-shi Kyoiku-iinkai),
Minamikawaramachi 3-1, Sakai-ku, Sakai City, Osaka>>

③ 학교로 신청(신청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을 희망하실 경우에도 학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카이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거나 학교에서 신청서를 입수한 후 학교에 제출(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해 주십시오. (초, 중학교에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은 초등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 2쪽 2-(2)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분은 첨부 서류(복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구청 창구로 신청

신청 기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의 오전 9시~오후 5시 15분 각 구청의 신청 창구로 다음을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1 도장(인주를 사용하는 것) ※신청보호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는 필요 없음
- 2 신청보호자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알 수 있는 것
- 3 2쪽 2-(2)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분은 첨부 서류(복사본)

취학원조(의료비 이외)에 관한 문의처

사카이시 교육위원회 학 무 과
장 학 계

TEL 228 - 7485 (직통)

FAX 228 - 7256

Mail kyogaku@city.sakai.lg.jp

2 대상이 되는 세대

사카이시에 주소가 있으면서 공립 초·중학교(국립, 지원학교는 제외)에 재적하는 아동 및 학생의 보호자로 다음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1) 2024 년분(2024 년 1 월~12 월)의 동일세대 전원의 소득합계액(국내외를 불문하고 단신부임자의 소득 및 연금, 퇴직금 등도 포함)이 아래 표의 기준액 이하인 세대

가 족 수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기 준 액 (급여 수입 기준)	216 만엔 (335 만엔)	259 만엔 (392 만엔)	289 만엔 (429 만엔)	323 만엔 (472 만엔)	366 만엔 (526 만엔)

· 소득액⇒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입니다. ('지급금액'이 아닙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공적연금 등 소득이 있는 분은 총소득금액에서 10 만엔(상한)을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

· 기준액⇒기준액은 참고치이며 세대 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2) 다음의 어떠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세대

해당하는 경우에도 ③·⑤~⑩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첨부이 없으면 2024 년분 소득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해 당 이 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복사본 가능)
신 청 시	①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불필요 ※ 6 월 이후 심사 때의 가족 구성에 따라 심사합니다.
	②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분 (아동수당이 아닙니다)	
	③ 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첩의 공공직업안정소장 인이 찍혀 있는 페이지
2024 년내 또는 2025 년내에	④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된 분 (가족구성 변경에 의한 경우는 제외)	불필요
	다음 ⑤~⑧ 항목에 대해서는 '감면(減免)'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⑤ 시민세가 감면된 분	○ 시민세, 부민세 세액 변경통지서
	⑥ 개인사업세가 감면된 분	○ 개인사업세 감면결정통지서
	⑦ 고정자산세가 감면된 분	○ 고정자산세 부과결정통지서
	⑧ 국민건강보험료가 감면된 분	○ 국민건강보험료 경정 결정통지서 (가족 전원이 대상인 경우에 한함)
	⑨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된 분	○ 국민연금보험료 면제·납부유예신청 승인통지서 · 20 세 이상의 납부대상자 전원의 것이 필요 · 면제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자가 대상 * 이름 및 면제기간이 적혀있는 페이지가 필요
	⑩ 생활복지자금의 대부분을 받은 분 (교육지원자금을 제외)	○ 생활복지자금 대부 결정통지서

※ 올해 들어서 보호자의 실업, 세대 상황의 변화(사망, 이혼)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해진 경우나, 그 외 모르는 것이 있으면 1 쪽의 문의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3 원조의 내용

«4 월 신청자의 연액»

지급비 항목 학교·학년		학용품비 등	입학용품비 (4월 신청자에 한함) *1 입학준비금	교외활동비 (숙박할 경우)	수학 여행비	무도비	의료비
초·중학교	1 학년	13,230 엔 〔 4 월 1,130 엔 5~3 월 1,100 엔 〕	57,060 엔	실 비 (3,690 엔 이내)	실비		학교에서 의료권을 발행
	2~5 학년	15,500 엔 〔 4 월 1,310 엔 5~3 월 1,290 엔 〕					
	6 학년	※1 63,000 엔					
중학교	1 학년	25,040 엔 〔 4 월 2,160 엔 5~3 월 2,080 엔 〕	63,000 엔	실 비 (6,210 엔 이내)		실 비 (7,650 엔 이내)	
	2~3 학년	27,310 엔 〔 4 월 2,340 엔 5~3 월 2,270 엔 〕					

- 학용품비 등— 신청월부터 개월수로 나누어 교재비용 등
학교징수금·통학용품비용·교외활동비용(당일치기) 등의 비용의 일부
- 입학용품비— 4 월에 취학원조를 신청한 초·중학교의 1 학년생의 분만 대상(입학준비금과 중복 지급은
없습니다)
※1 입학준비금-초등학교 6 학년생만 대상이며 **3 기 지급시(3 월 중순)에 지급합니다.**
- 교외활동비(숙박을 수반)—실시월 이전에 신청이 있었으며 참가한 분만 대상(교통비, 견학료, 입장료만)
- 수학여행비— 실시월 이전에 신청이 있었으며 수학여행에 참가한 분만 대상(교통비, 숙박비, 견학료,
입장료 등)
※ 초·중학교 각각 재학중에 1 회
- 무 도 비— 중학교의 수업에서 시행하는 유도의 유도복·스모의 마와시(스모의 아래의 옷)의
구매비용 등으로 개인적으로 스포츠용품점에서 산 경우에는 영수증(보호자 또는
학생의 성명, 금액, 구매품목명, 수령일, 판매점 명의 기재가 있을 것)이 필요(3 년간에
한 번만이며, 거슬러 올라서의 지급은 없습니다).
- 의 료 비— 학교에서 치료를 지시한 대상 질병에 한하여 치료에 드는 보험진료비의 본인
부담액분 (뒷면 참조)
- 급 식 비— 공회계의 학교급식비로 총당하므로 보호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시의 주의사항

- ◎ 생활보호의 교육부조가 정지, 폐지된 경우 취학원조 신청이 없으면 원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원조를 희망하시는 분은 취학원조를 신청해 주십시오.
- ◎ 생활보호의 교육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수학여행비와 의료비만 대상이 됩니다.
수학여행을 시행하는 학년의 자녀가 있는 세대는 취학원조 신청이 없으면 수학여행비의 원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취학원조를 신청해 주십시오.

가부 결정은 세대 전원의 소득액과 부양상황을 고려해서 심사합니다. 아래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2025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

※ 반드시 소득신고 등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카이시

2024년의 소득 신고를 안 하신 분은 조속히 신고하십시오.
(소득신고 등을 마치신 분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기타 시구정촌(市區町村)

6월경에 ('과세증명서'의 발행시기는 대략 6월 이후가 되기 때문),
거주했던 시구정촌에서 발행하는 **2025년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원천징수표는 불가)
· 거주했던 시구정촌에서 소득신고 등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 5월 이전에 입수한 '과세증명서'는 2024년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거주했던 시구정촌에
확인하십시오.)

* 급여소득자로 근무처에서 소득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필요 없지만, 피부양자(동일생계 배우자 및 공제대상 부양친족)로 되어 있지 않은 분은 그 분의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 수입이 없어도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 주십시오.(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 취학원조 신청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승낙한 후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 ◆ 가족 전원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것.
 - ①주민기본대장 ②시민세 및 부민세의 과세대장 ③생활보호의 수급상황 ④아동부양수당의 수급상황 ⑤신체장애자수첩 및 정신장애자복지수첩의 등급 및 요육수첩의 구분
 - ◆ 취학원조금에 관한 인정 및 지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카이시 및 기타 시구정촌의 관련 기관에 조회 또는 통지할 것.
 - ◆ 취학원조(입학준비금)의 지급 후에 국립 및 사립 중학교, 지원학교에 진학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할 것.
 - ◆ 취학원조의 급식비를 사카이시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학교급식법 제 11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학교급식비를 말함)로 충당할 것.
- ◎ 취학원조의 지급에 있어서는 학교장을 원조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위임했을 경우 및 아래 표의 '인정자에 대한 지급예정시기'의 전월 15 일 현재에 있어서 학교납부금 등에 미납이 있는 경우는 그 기의 원조금(전액)을 학교장 경유로 지급합니다.

5 결정 통지와 인정자에 대한 지급시기

신청월	각 통지의 송부		인정자에 대한 지급예정시기 ※2는 신청 달 해당분부터 지급 대상		
	인정 · 비인정통지	계좌이체통지	1기(4~7월)분	2기(8~12월)분	3기(1~3월)분
4·5월	7월중순	7월중순	※2 7월중순	12월중순	3월중순
6~10월	신청월의 다음 월중	12월중순		※2 12월중순	3월중순
11~2월	(2월 신청은 수시)	3월중순			※2 3월중순

- 신청 후의 각종 통지는 우송해 드립니다.
- 수학여행 등의 출결 등 원조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에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심사 절차상,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원조(학교보건안전법 의료권) 제도에 관하여

사카이시에서는 아래의 원조대상자가 대상질환을 치료받았을 때 치료에 드는 보험진료비의 본인 부담액을 원조하고 있습니다.

1. 원조대상자

- (1)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의 아동학생
(2) 취학원조 인정세대의 아동학생

2. 대상질병

학교보건안전법에 기초한 다음 질병에 한합니다. 아래 이외의 질병 치료에는 의료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트라코마 2 결막염 3 중이염 4 만성부비공염 5 아데노이드 6 백선
7 개선(옴) 8 농가진(전염성농가진) 9 기생충병(기생충알 보유 포함) 10 우식증(충치)

※ 다음 경우에는 의료권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의 건강진단 결과, 대상질환이 발견된 경우
- 학생의 신청 또는 건강상담 등에 따라 학교로부터 대상질환의 치료를 지시받은 경우

◎ 주의사항

- 반드시 매달마다 진료를 받기 전에 학교에 신청하여 의료권을 발행받으십시오.
- 의료권을 발행받지 않고 치료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의료비원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취학원조 신청을 마치신 분(심사결과를 기다리시는 분)께 ◆◆◆

- ① 전년도에 취학원조 인정을 받고 금년도 4, 5 월에 취학원조 신청을 한 세대의 아동학생으로 심사결과가 통지되는 7 월 중순까지 대상질병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진료를 받기 전에 학교에 신청하여 의료권을 발행받으십시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의 아동학생으로 대상질병의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원조를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진료를 받기 전에 학교보건체육과에 문의하십시오.
- 전년도에 취학원조 인정을 받았고 금년도 6 월 이후에 취학원조 신청을 한 세대
 - 처음으로 취학원조를 신청한 세대
 - 전년도는 미신청 또는 비인정으로 금년도에 신청한 세대

3. 원조액

의료권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대상 질병의 치료에 드는 보험진료비의 본인 부담액은 사카이시가 의료기관 등에 납니다. 또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보건체육과에 문의하십시오.

※ 단, 다음의 경우 등에는 본인 부담액이 발생합니다.

- 학교에서 발행한 의료권을 지참하지 않고 진료받은 경우
- 의료권을 발행받지 않고 진료받은 경우
- 보험적용 외의 치료 등이 있었을 경우
- 대상질병 이외의 치료도 받은 경우

의료비원조(의료권)에 관한 문의처

사카이시 교육위원회 학교보건체육과

TEL 340 - 0316(직통)

FAX 228 – 7421

Mail gakukyo@city.sakai.lg.jp

사카이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는 취학원조 제도 이외에도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카이시 홈페이지(건강·복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 사카이시 장학금 제도에 관하여 ~~

사카이시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카이시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